

IV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보험산업 시사점

-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은행자본 규제의 강화, 유동성 규제 도입과 더불어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기준을 강화하였음.
 - 특정 금융기관의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요소를 제한하기 위해 SIFI 규제를 도입
-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조치는 향후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권의 대응 마련이 요구됨.
 - 금융권역별로 자금조달, 투자방식, 핵심사업 부문, 노출된 리스크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미시건전성 감독 규제에 있어서는 권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체계가 도입될 필요성 존재
 - 한편, 금융시스템의 혼란 방지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에 있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타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전이를 고려한 규제체계 수립이 요구됨.

1. 금융권역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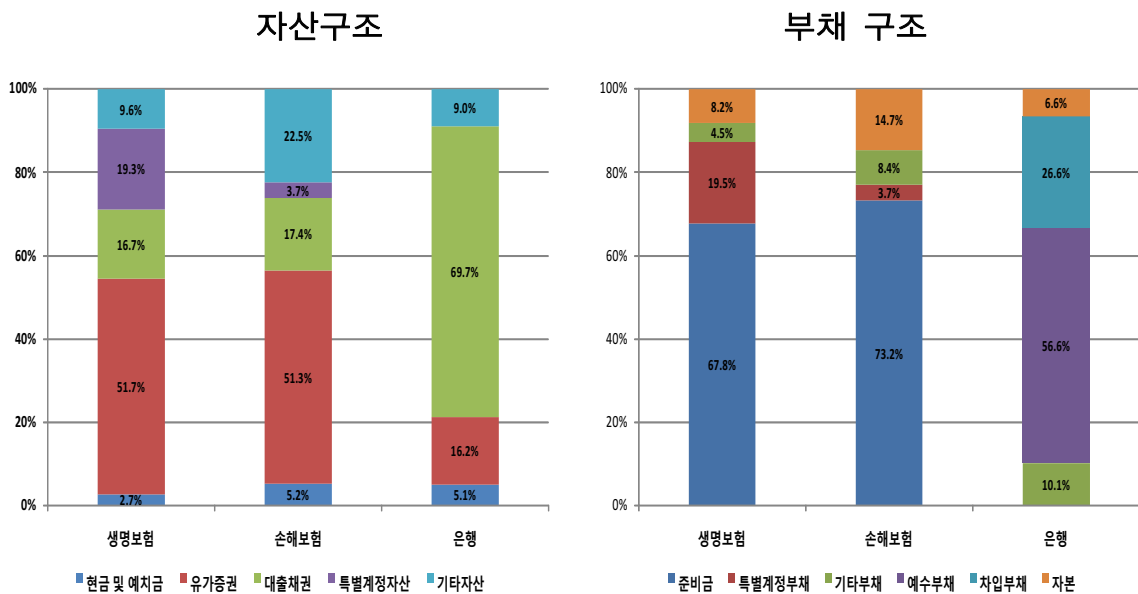
가. 자금조달 형태 및 투자방식

-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보험계약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주주지분이나 후순위 부채의 규모는 작은 반면, 은행의 경우 보험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구조가 다양

- 보험회사 부채의 경우 70% 가량이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은행 부채의 대부분은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로 구성
- 은행의 자금조달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사업모형과 더불어, 특정 영업활동에 대해 특정한 자금 조달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는 환경을 반영함.
-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은 고객 및 타 금융기관의 예금, 기업어음, 채권, 커버드 본드, Repo 거래, 주주지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됨.

〈그림 2〉 국내 금융업권별 자산 및 부채 구조



주 : 2010년 6월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회사 자산의 평균 듀레이션은 8~10년 정도인 반면,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은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짧은 특징을 보임.
 - 이에 따라 보험사의 대차대조표는 은행에 비해 변동성이 작은 특성을 보유
 - 또한, 단기자금인출의 규모가 작고, 속도 면에 있어서도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특징을 보유
-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나 투자 손실로 발생하며, 은행의 경우는 대출 손실이나 자산가치의 감소와 관련됨.
 - CEA(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자산 가치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과 관련성이 낮은 특징을 보임.
 -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부채와의 매칭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국내보험회사의 자산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수준이며, 이 중 국공채에 대한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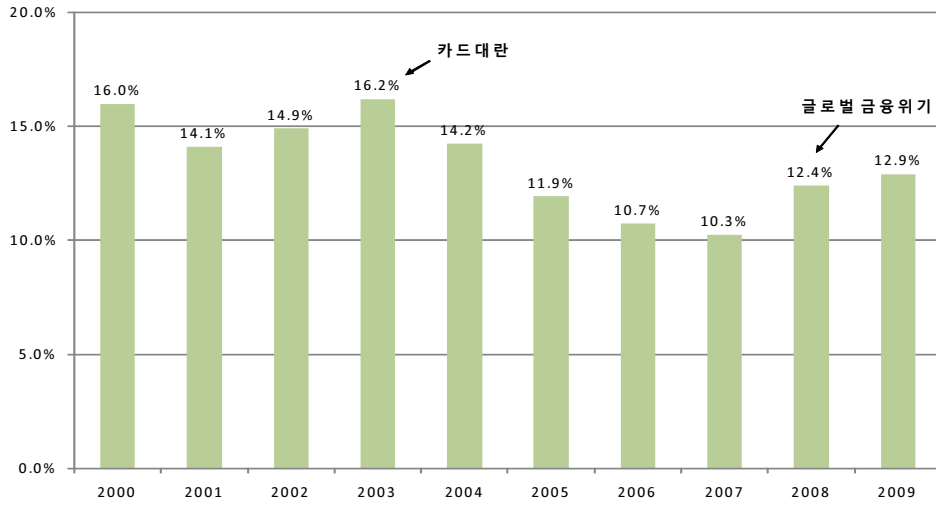
나. 유동성 위험

-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각국은 잠재적인 유동성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보유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은행들은 적절한 자본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공적자금 지원으로 이어짐.
 - 특히, 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의 유동성규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간 규제차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의 유동성 규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단기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대출로 운용하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다른 사업구조 및 상품 특성으로 인해 유동성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부채를 장기로 조달하여 단기자산에 투자하는 사업모형을 보유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해약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타 금융업권에 비해 낮은 실정²⁾
 -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실효상실해약률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보험계약의 대규모 인출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자산측면에서 유동성 리스크는 이연신계약비, 재보험에 의한 회수가능 자산, 영업권 등 자산의 감액 또는 담보요구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나, 이들 자산 항목의 경우 가치변화가 급변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게 됨.

2) 보험산업 내에서도 업권별 사업구조의 특성상 유동성 리스크로 인한 충격의 효과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 차이를 보임. 즉, 손해보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외생적 사고 발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해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단기적인 보험계약 특성으로 인해 국채와 같은 유동성 자산에 대한 보유가 높은 상황이므로, 해약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실효상실 해약률 추이



주 : 실효상실해약률=실효상실해약액/(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다. 시스템 리스크

■ 은행과 보험사에 있어서의 시스템 리스크의 차이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제시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의 및 평가 기준을 기초로 판단 가능

- FSB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금융시스템 또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서비스의 흐름에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음.
- FSB는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SIFI)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규모, 대체가능성, 상호연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IAIS의 경우 이러한 기준 외에 경제로의 전염 속도를 제안
 - 금융시스템의 개별 구성요소로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의 규모, 위기 발생 시 타 금융부문에 대한 동일 서비스 제공 가능 수준, 금융시스템의 타 구성요소와의 상호 연계 정도를 기준으로 SIFI를 구분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평가 기준 중 하나인 규모의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평가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음.
 - 보험회사의 경우 규모가 증대될 경우 대수의 법칙에 의해 리스크 분산 효과가 가능하므로, 규모가 클수록 보험사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줌.
-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시스템 리스크의 영향을 받기 쉬우나, 금융시스템 또는 경제부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³⁾
 - 보험회사의 경우 은행과는 역할이 상이하며,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를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RBC 등 효과적인 보험감독 및 규제체계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시스템 리스크 확대 유발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음.

2. 보험업에 대한 시사점

- 은행의 BaselⅢ 규제 합의사항은 향후 보험산업의 규제 개편 논의를 촉발 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권내의 대응 방안마련이 요구됨.
 -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 사항은 주로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나 향후 유사한 규제가 보험업에 대해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또한 BCBS와 FSB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업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임.

3) IAIS(2010), position statement on key financial stability issues

- 은행에 대한 자본 강화, 레버리지 비율 도입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보험산업에 직접 적용되기보다, 보험의 리스크 특성이 반영된 감독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BaselⅢ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본구성의 강화를 수용할 필요 존재⁴⁾
- 다만, BaselⅢ의 보통주 자본 위주의 강화보다는 SolvencyⅡ의 기본자본 위주의 강화가 보험산업에 보다 합리적인 방식인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시행 예정인 SolvencyⅡ의 경우 이미 높은 리스크를 보유한 사업영역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을 요구하고 있어, BaselⅢ 도입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⁵⁾
-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경우 보험산업에서 매출(보험료)과 부채(준비금)에 대해 일정한 자본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특징을 보임에 따라 동 규제 도입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은행은 수취업무 이외에도 은행 간 거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본조달이 이루어지는 반면, 보험회사는 대부분 보험영업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게 되어 레버리지비율 도입은 보험영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4) 김해식(2010.11.29), 은행업의 BIS3와 보험업 건전성 규제, KIRI Weekly, 보험연구원
 5) CEA(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가적인 요구자본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보험계약자, 투자자 측면에서 보험에 대한 관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요구자본의 추가적인 확대에 따른 실익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1년 4월 적용 예정인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의 경우 보험료나 준비금 증가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위험자본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에 모두 자본규제가 적용되는 특징을 보임.
-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하여 보험산업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나, 시스템 리스크 유발가능성이 존재하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SIFI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보증보험 같은 특정 업무영역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킬 수 있으며, 보험그룹 내부 또는 부문 간 리스크 전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
 - 보증보험회사의 업무 영역은 크게 보험영업, 구상, 투자로 구성되는데, 영업업무와 투자업무의 경우 일반손해보험회사의 성격과 유사하나,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자나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구상업무가 존재하여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
- 재보험사의 경우 리스크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나, 파산시 원수보험사들의 보험인수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실물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
 - 그러나 재보험사의 핵심 업무인 자본관리, 재보험 제공, 재재보험(retrocession)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위험전가 활동의 경우 계약 규모가 작아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제한적이며, 산업 내에서 이러한 영향을 쉽게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음.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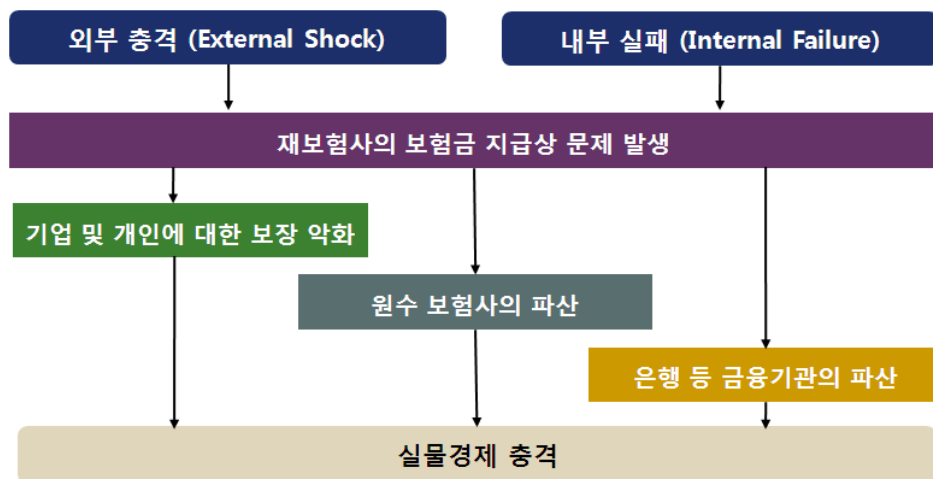
6) Swiss Re(2010), The essential guide to reinsurance; The Geneva Association Systemic Risk Working Group(2010), Systemic Risk in Insurance-An analysis of 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The Geneva Association

- 또한, 규제차익 방지와 금융위기 시 타 그룹의 영업활동에서 기인한 파급확산 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효과적인 복합금융 그룹 감독을 위해 다음 사항 들을 고려할 필요 존재

- 복합금융그룹의 개별 사업단위 부문의 투명성 제고

- 복합금융그룹 내 보험과 은행부문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리리스크 등의 통합리스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됨.

〈그림 4〉 재보험사 시스템 리스크의 실물경제 전이 경로



자료 : Swiss Re(2003), Reinsurance - a systemic risk?

- 다양한 지역과 규제체계 하에서 복합금융그룹의 특정 부문을 규제할 수 있는 요건의 명확화
- 금융권역별 규제 간 불합리한 불일치성 제거 및 상이한 리스크 기준 자본에 따른 규제 차익 방지
- 복합금융기관의 전체 리스크를 충당할 수 있는 그룹차원의 충분한 가용자금 확보

-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와 은행의 경우 자본조달 구조, 리스크 구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효과적인 리스크 통제를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감독 체계 수립이 요구됨.
- 은행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보험사에 적용하는 것보다 보험사의 사업모형에 적합한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미시건전성규제를 기초로, 위기 발생 시 다수의 건전한 보험 사업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파급 확산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필요